

【논문】

## 조선초기 여진 귀화인의 통혼과 통혼규정

김호철\*

### 차례

- I. 머리말
- II. 조선정부의 여진인 통혼 개입
- III. 통혼규정의 제정과 그 의의
- IV.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조선정부가 개입한 통혼사례를 검토하고, 여진인의 통혼대상을 규정한 통혼규정이 제정된 시점의 조선정부 내 인식과 북방상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조선 건국 후 조선의 북방에서는 지역적 인접성으로 인해 여진인과 조선인의 통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통혼을 통해 조선은 대외적으로 여진인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명분으로 이용하기도, 대내적으로는 여진인을 정착시킬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통혼규정이 제정된 배경은 북방경영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방경영은 특히 세종의 적극적인 의지로 실행되었는데, 북방경영에 고려했던 요소 중 하나는 북방에 혼거하던 여진인과 그 정착이었다. 이 시기 통혼대상을 규정한 것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진 추장과의 관계가 약해진 여진인들은 이탈할 우려가 있었고, 조선이 통혼규정을 제정하여 조선과의 관계를 이어가도록 하였다. 결국 조선은 '오면 어루만지고, 가면 붙잡지 않는 것이 옳다.'는 정책과는 다르게 여진인의 정착에 적극 대응하였다.

주제어: 여진 귀화인, 통혼, 통혼규정, 북방경영

## I. 머리말

세종은 여진 세력에 대한 대책으로 '오면 어루만지고, 가면 붙잡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나,<sup>1)</sup> 실제 조선정부가 여진인에 대해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정부는 명과 여진인 관할 문제에서 적극 대응하여 여진인에 대한 관할을 주장하기도 하였고, 여진인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조선으로부터 이탈을 막고자 하였다. 통혼은 그 이탈을 막는 장치 중 하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통혼규정은 귀화인<sup>2)</sup>의 통혼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1438년(세종 20)에 恒式이 되었다. 통혼규정은 세종이 즉위한 이후 시간이 지난 시점에 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1438년(세종 20)이라는 시점은 규정이 필요한 당위성이 제기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혼인의 형태는 계급내혼제가 보편적이었기 때문에,<sup>3)</sup> 보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민족과의 통혼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조선 사회의 개방성을 살펴볼 수 있는 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여진 귀화인의 통혼을 다룬 선행연구는 크게 여진사회에 대한 연구, 여진인 개인에 대한 연구, 통혼정책에 대한 연구에서 이루어졌다. 여진사회에 대한 연구에서는 여진 풍속의 일부인 통혼을 다루었다.<sup>4)</sup> 여진인 개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조선에 정착한 여진 가문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고,<sup>5)</sup> 여진인 개인을 분석하며 그 일부인 통혼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며,<sup>6)</sup> 여진인의 활동을

---

1) 『세종실록』 권53, 세종 13년 7월 30일 임진.

2) 조선시대의 歸化에 대한 용어로는 대표적으로 向化, 投化 등이 사용되었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현재 사용하는 용어인 '귀화'로 포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3) 최재석, 2008, 『韓國家族制度史研究』, 일지사, 483쪽.

4) 전해중, 1972, 「女眞風俗攷」, 『광운대학교 논문집』 2; 이현희, 1977, 「朝鮮王朝의 向化野人 交涉考: 接待問題의 用例」, 『성신여자대학교 연구논문집』 10; 김구진, 1989, 『13C~17C 女眞 社會의 研究: 金 滅亡 以後 清 建國 以前까지 女眞社會의 組織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 박정민, 2022, 「여진 추장에서 조선의 관료로-조선 초 최척 일가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99.

6) 권영란, 2017, 「조선 전기 대여진정책과 여진 귀화인 童淸禮」, 『역사와실학』 62; 왕영일, 2003, 「이 지란에 대한 연구-조선건국과 여진세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성주, 2012, 「조선 연산군대 童淸禮의 建州三衛 파견에 대하여」, 『만주연구』 14; 가우신, 2023, 「알타리(斡朶里)부 여진인 동청례(童淸禮) 가문의 향화와 고증연구」, 『한국학연구』 71.

고찰하면서 조선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기도 하였다.<sup>7)</sup>

통혼정책에 대한 연구에서는 귀화인 통혼의 의의를 도출하였다. 장병인은 조선의 귀화인 통혼정책에 대해 세종시기부터 북방 개척에 나서게 되면서 통혼을 권장하였고, 통혼정책은 귀화인들의 동화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았다.<sup>8)</sup> 백옥경은 이민족과 통혼해야했던 조선인 여성에 집중하였으며, 그 삶을 통해 귀화인과 혼인한 여성들은 구별과 차별, 불안정함의 연속선상에 놓여있었다고 보았다.<sup>9)</sup> 이외에도 서지학 연구에서 여진인의 통혼사례를 언급하기도 하였다.<sup>10)</sup>

위의 선행연구를 통해 조선초기 여진인에 대한 통혼의 풍속, 사례, 정책 등 전반적인 이해를 심화할 수 있었다. 여진사회에 대한 연구에서는 여진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심화시켜주었고, 여진 귀화인 가문 및 개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여진인 개인이 조선 사회에서 가지는 의의를 도출하였으며, 서지학 연구에서는 각 세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통혼정책에서는 통혼에 대해 귀화인의 정착에 그 목적이 있음을 밝혀내기도 하였으나, 통혼규정이 필요로 하였던 당시 상황에는 비교적 주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간의 연구성과들을 수렴하여 통혼규정이 제정된 시기에 주목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통혼규정에 대해 어느정도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통혼규정이 제정되었던 당시 조선의 상황에는 비교적 주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 시기 통혼이 이루어진 사례와 통혼규정 제정 시기를 전후한 조선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당시 북방경영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에 II장에서는 조선정부가 통혼에 개입한 사례를 검토하고, 조선정부가 어떠한 목적으로 통혼에 개입하였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통혼규정이 제정된 시기 조선의 북방상황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조선정부가 북방경영에 어떠한 방법으로 통혼규정을 활용하고자 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7) 이규철, 2020, 「조선전기 향화 여진인의 활동과 경제인의 삶」, 『역사와 현실』 117.

8) 장병인, 1997,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9) 백옥경, 2009, 「조선전기 향화인에 대한 혼인규정과 여성」, 『역사학연구』 34.

10) 허홍식, 1978, 「朝鮮初 沈敬宗의 功臣戶와 그 分析」, 『대구사학』 15·16; 1996, 「13-5 世紀 戶籍 料의 補完과 批判」 『고문서연구』 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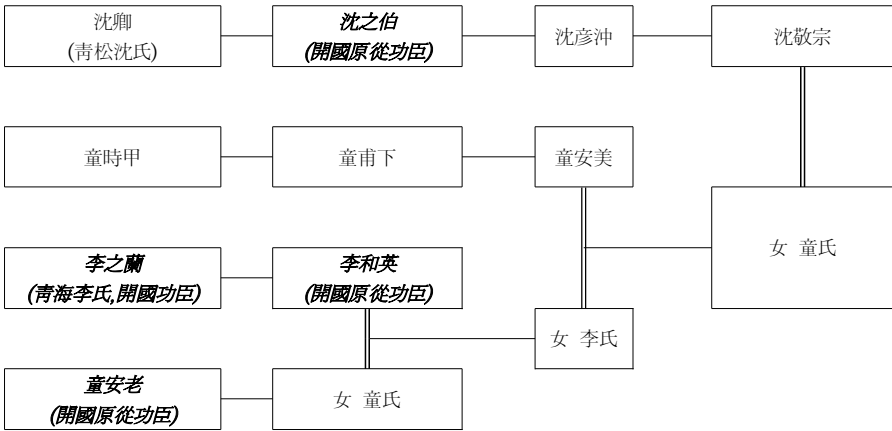
## II. 조선정부의 여진인 통혼 개입

원명교체기 요동은 여진인들에게 혼란한 상황이었다. 몽골의 장수 納哈出이 만주지역을 무대로 하여 명의 군사와 싸우면서 오래도록 대치하였다. 여진인들은 만주지역에 거주하며 전란을 피하려 이동하였고, 이 시기에는 여진 세력과 분포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sup>11)</sup> 이성계는 이러한 배경에서 고려말에 변방을 평안히 할 계책을 올리기도 하였다. 이성계는 변방을 평안히 할 계책에서 통혼을 대개로 여진 지역으로 넘어가기도 향도가 되기도 한 점<sup>12)</sup>을 지적한 만큼 변방에서의 통혼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었다.<sup>13)</sup>

이와 같이 여진인이 남하하던 상황과 조선의 북방에 거주하던 정주민의 통혼이 잘 드러나는 예가 있어 주목된다. 바로 여진인 童安美<sup>14)</sup>일가의 사례이다. 동안미의 부친은 童甫下로 관하에 20여 戶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동보하는 端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sup>15)</sup> 동보하의 아들 동안미는 이화영의 딸과 통혼하였다. 여기서 이화영은 개국공신이자 대표적인 여진 귀화인인 이지란의 아들이다. 이후 동안미의 딸은 함경도<sup>16)</sup> 단천에 세거하던 청송심씨 沈敬宗과 통혼하였다.

- 
- 11) 김구진, 2000, 「조선 초기에 한민족으로 동화된 토착여진」, 『백산학보』 58, 151-152쪽.
  - 12) 『태조실록』 충서: …太祖因獻安邊之策曰: “北界與女眞, 達達, 遼 藩之境相連, 實爲國家要害之地. 雖於無事之時, 必當儲糧養兵, 以備不虞. 今其居民, 每與彼俗互市, 日相親狎, 至結婚姻, 而其族屬在彼, 誘引而去, 又爲鄉導, 入寇不已….”
  - 13) 이성계는 자신을 따르던 여진인들에게 조선인과 통혼하도록 하였다(『태조실록』 권8, 태조 4년 12월 14일 계묘). 그러나 통혼한 조선인명이나 구체적인 신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 14) 동안미는 다양한 이름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심경종 호구첩정』에서는 ‘童安美’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1439년 동안미 호구첩정』에는 ‘董安美’로 표기 되어 있다. 이는 童과 董의 혼용으로 추정된다. 동안미의 본 또한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허홍식은 여진 귀화인 이지란의 본이 太原에서 大原으로 바뀌는 등의 모습을 원에서 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본관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이 지역 주민 가운데 유력 가문에서도 자주 본관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았다(허홍식, 1996, 앞의 논문, 43쪽). 『1439년 동안미 호구첩정』에서 동안미의 본은 榮川, 『1456년 심경종 호구첩정』에는 大原, 『1490년 삼양 준호구』에는 端州(端川)으로 기재되어 있다.
  - 15) 『세종실록』 권78, 세종 19년 8월 7일 갑자.
  - 16) 지금의 함경도는 다양한 명칭으로 지칭되었다. 여말선초에는 동북면으로 지칭되었다가 1398년 安邊 이북 靑州 이남을 永興道, 端州 이북 孔州 이남을 吉州道(『태조실록』 권13, 태조 7년 2월 3일 경진), 1413년 永吉道(『태조실록』 권26, 태종 13년 10월 15일 신유), 1416년 咸吉道(『태조실록』 권32, 태종 16년 9월 9일 정유)로 변화하였다가 1470년 永安道(『성종실록』 권3, 성종 원년 2월),

심경종의 가계를 살펴보면, 심경종의 祖父는 沈之伯으로 개국원종공신에 녹훈 되었으며, 현재 그의 녹권이 현전하고 있다.<sup>17)</sup> 그리고 심경종의 아버지 沈彦沖은 1409년(태종 9) 3월 28일 判修義副尉龍騎巡衛司前領副司正으로 임명된 朝謝帖이 현전하고 있어 심언충이 무관으로 관직생활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18)</sup> 심언충의 아들인 심경종은 단천의 品官으로 있으면서 함경도민이 주축이 되었다고 평가받는 이시애의 난에 가담한 정황도 확인된다.<sup>19)</sup> 이를 통해 심경종 일가는 북방, 특히 함경도에 정착해있던 조선 가문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안미 일가는 조선으로 남하하여 정착하였고, 심경종 일가는 단천에 세거하고 있었으며 이들 가문은 통혼하였는데, 그 혼인 관계도는 [그림 1]과 같다.



\* 겹줄은 통혼관계를 의미함

출전: 『1456년 沈敬宗 戶口牒呈』, 『1439년 童安美 戶口牒呈』, 『조선왕조실록』

[그림 1] 동안미 일가의 혼인 관계도

1498년에 현재의 咸鏡道(『연산군일기』 권29, 연산군 4년 4월)로 개칭되었다. 이처럼 함경도 일대는 시기별로 다양한 명칭 변화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편의상 함경도로 지칭하고자 한다.

17) 『1397년 심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

18) 『1409년 심언충 조사첩』.

19) 『세조실록』 권42, 세조 13년 5월 29일 기사.

[그림 1]은 『1456년 沈敬宗 戶口牒呈』을 기반으로 그 혼인 관계도를 작성한 것이다. 개국원종공신 동안로의 딸과 개국원종공신 이화영이 통혼하였고, 그 사이의 딸이 여진인 동안미와 통혼하였으며, 동안미의 딸이 다시 심경종과 통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에서는 1명의 개국공신, 3명의 개국원종공신 총 4명의 공신을 확인할 수 있다. 개국공신 1명은 이지란으로 태조 이성계의 배향공신이다. 3명의 원종공신은 심지백, 이화영, 동안로가 확인된다. 이화영과 동안로의 딸이 통혼한 것에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여진 공신가문간 통혼이 이루어졌고 다시 그 후손은 다른 조선인 원종공신가문과 통혼하며 조선에 정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동안미 일가의 사례는 다수의 여진인 공신을 확인할 수 있는 특수한 사례이지만, 당시 북방의 통혼 상황을 잘 드러내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세종시기에는 국가 차원에서 여진인을 통혼시키고자 하기도 하였다. 바로 侍衛하던 여진인의 사례이다.<sup>20)</sup> 세종 시기 처음 자원시위한 여진인은 童所羅이다. 동소라는 부친인 童沙里甫가 崔仲海, 長命, 金哲 등 20여 명을 꺾어 야인 땅으로 도망갔을 때, 통사와 함께 東良北에 가서 10여 명 정도를 되찾아왔고,<sup>21)</sup> 이후 자원시위하고자 하였다.<sup>22)</sup> 동소라의 통혼 기사는 없지만, 동소라 이후에 귀화한 童千古리가 동소라의 예에 의해 집과 娶妻한 것<sup>23)</sup>을 통해 동소라 또한 조선에서 통혼하도록 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조선정부는 시위하던 여진인들에게 의복·갓·신·鞍馬·집·노비를 하사하고 취처하도록 하였다.<sup>24)</sup>

그러나 조선정부가 이들 모두에게 통혼을 하도록 한 것은 아니었다. 朴乙賓介가 시위하고자 왔을 때 처를 데려왔고, 조선정부는 취처를 제외한 동일한 지원을

20) 태종시기 저용개 또한 자원시위하였으나 조선에서 구체적으로 지원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태종실록』 권30, 태종 15년 11월 6일 기해).

21)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21일 신사.

22) 『세종실록』 권19, 세종 5년 1월 27일 기유.

23) 『세종실록』 권19, 세종 5년 2월 8일 기미.

24) 『세종실록』 권24, 세종 6년 4월 12일 정사; 권27, 세종 7년 3월 24일 갑오; 권27, 세종 7년 12월 26일 신묘; 권31, 세종 8년 1월 26일 신유.

하였다.<sup>25)</sup> 즉, 시위하고자 한 여진인이 처가 없을 경우 취처하도록 한 것이다. 조선정부는 통혼하지 않은 여진인에게 조선인과 통혼하도록 하였고, 통혼하도록 한 사례는 [표 1]과 같다.

[표 1] 세종대 취처 여진인 사례

| 연번 | 이름           | 부족         | 용례          | 전거               |
|----|--------------|------------|-------------|------------------|
| 1  | 童干古里         | 미상         | 娶妻          | 세종 5년 2월 8일 기미   |
| 2  | 金西澄阿<br>金吾光阿 | 알타리        | 令娶妻         | 세종 5년 12월 12일 기미 |
| 3  | 劉吾通哈 등       | 활아간<br>올적합 | 令娶妻         | 세종 6년 1월 6일 계미   |
| 4  | 崔於夫哈         | 알타리        | 令娶妻         | 세종 6년 2월 3일 기유   |
| 5  | 甫乙項哈         | 올적합        | 令娶妻         | 세종 6년 2월 10일 병진  |
| 6  | 古乙道哈<br>巨之應哈 | 올적합        | 令娶妻         | 세종 6년 3월 1일 정축   |
| 7  | 李都乙赤         | 알타리        | 令娶妻         | 세종 6년 4월 12일 정사  |
| 8  | 豆乙公阿         | 올적합        | 令娶妻         | 세종 7년 3월 24일 갑오  |
| 9  | 金巨伊代         | 여진         | 娶妻          | 세종 7년 8월 21일 정해  |
| 10 | 阿允哈 仇音甫下     | 알타리        | 令娶妻         | 세종 7년 12월 26일 신묘 |
|    | 末應之哈         | 올적합        |             |                  |
| 11 | 弓眞, 右延主      | 알타리        | 令娶妻         | 세종 8년 1월 26일 신유  |
| 12 | 也羅羅吾也 등      | 알타리        | 娶妻          | 세종 10년 2월 15일 정묘 |
| 13 | 崔老好乙取        | 알타리        | 令娶妻         | 세종 12년 3월 20일 경신 |
| 14 | 柳者           | 올적합        | 使娶妻         | 세종 16년 1월 20일 무술 |
| 15 | 童松古老         | 알타리        | 使娶妻         | 세종 16년 6월 1일 병오  |
| 16 | 時家老, 也叱大     | 파저강에서 음    | 令娶公私婢嫁良夫所生女 | 세종 20년 1월 28일 계축 |
| 17 | 童羅松介         | 알타리        | 娶妻          | 세종 23년 1월 23일 신유 |
| 18 | 好陽可          | 여진         | 許娶妻         | 세종 23년 2월 26일 계사 |
| 19 | 童毛多吾赤        | 알타리        | 許娶妻         | 세종 23년 2월 30일 정유 |
| 20 | 也吾乃          | 알타리        | 許娶妻         | 세종 23년 3월 2일 기해  |
| 21 | 吾同古          | 올량합        | 許娶妻         | 세종 23년 3월 3일 경자  |
| 22 | 金波老 등 2인     | 알타리        | 許娶妻         | 세종 23년 3월 16일 계축 |

25) 『세종실록』 권95, 세종 24년 1월 18일 경진.

|    |       |         |     |                   |
|----|-------|---------|-----|-------------------|
| 23 | 童松古老  | 알타리     | 許娶妻 | 세종 23년 4월 10일 병자  |
| 24 | 童所老加茂 | 알타리     | 許娶妻 | 세종 23년 4월 17일 계미  |
| 25 | 朱甫非   | 올랑합     | 命娶妻 | 세종 23년 11월 16일 기유 |
| 26 | 三波    | 알타리     | 使娶妻 | 세종 24년 2월 11일 임인  |
| 27 | 束時    | 올랑합     | 使娶妻 | 세종 24년 4월 26일 병진  |
| 28 | 李阿豆   | 낭발야한 관하 | 令娶妻 | 세종 25년 4월 11일 병신  |

[표 1]에서는 28명 이상의 여진인이 조선인과 통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족 별로 살펴보면 알타리가 15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알타리가 조선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여진 부족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올랑합, 올랑합 등 여러 여진 부족들을 확인할 수 있어 통혼에서 부족 별 차이를 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정부가 주도하여 통혼한 여진인은 [표 1]에 제시된 여진인 외에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정황으로 통혼한 것이 확인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여진 귀화인 마변자는 세종시기에 주로 활동하였으며 부친때부터 조선에서 벼슬한 것으로 보인다.<sup>26)</sup> 마변자는 올랑합을 招諭하는 데에 파견되기도 하였고,<sup>27)</sup> 통사로 파저강 정벌에 참여하여 공을 세웠으며,<sup>28)</sup> 내조한 여진인의 통역을 맡기도 하였다.<sup>29)</sup> 당시 마변자의 집에는 많은 여진인들이 왕래하였는데, 세종은 마변자의 집이 누추한 것으로 판단하여 밭 35결과 면포 1백 필을 주어 집을 사도록 하였다.<sup>30)</sup> 따라서 마변자는 조선 내 주요 여진인 중 한 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에서 활약하였던 마변자에게 조선정부가 통혼하도록 한 기록은 없다. 다만, 良民의 딸과 통혼한 정황이 확인되기 때문에<sup>31)</sup> 마변자 또한 조선정부에서 통혼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실제 통혼한 여진인은 더 있었을

26) 『세종실록』 권82, 세종 20년 7월 11일 계사.

27) 『세종실록』 권18, 세종 4년 11월 25일 무인.

28) 『세종실록』 권60, 세종 15년 5월 7일 기미.

29) 『세종실록』 권87, 세종 21년 12월 6일 경진.

30) 『세종실록』 권99, 세종 25년 1월 9일 을축.

31) 『세종실록』 권82, 세종 20년 7월 11일 계사.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통혼과 관련한 기록은 ‘娶妻’, ‘令娶妻’, ‘使娶妻’, ‘命娶妻’ 등으로 나타나 취처를 하도록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許娶妻’도 쓰여 취처를 허락하기도 한 것이 주목된다. 취처를 허락한 사례는 1441년(세종 23) 2월부터 4월까지 나타나는데, 조선정부가 통혼을 허락한 이들은 去留情願과 관련 있다.

거류정원은 명이 조선에 머무르고 있던 여진인들이 그대로 조선에 머무르고자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였다. 알타리 주장 童倉·凡察 등이 管下 3백여 호와 더불어 함경도 회령에서 婆猪江으로 도망하였을 때,<sup>32)</sup> 범찰은 명에 관하인 170여 家를 조선이 보내주지 않는다고 아뢰었다.<sup>33)</sup> 이에 명은 조선에 사신을 보내어 실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sup>34)</sup>

조선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명 사신에게는 물품을 비밀히 주며 회유하였고,<sup>35)</sup> 남아 있는 범찰의 여러 형들은 초유하여 서울로 올려보내도록 하였다.<sup>36)</sup> 거류정원 조사 시기 통혼을 허락받은 여진인 대부분은 알타리이고, 범찰 또한 알타리의 주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선정부는 알타리를 회유하고자 조선인과 통혼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정부는 회유의 성격으로 통혼을 허락하기도 하였지만, 통혼은 여진인의 조선 관할을 주장하는 명분이 되기도 하였다. 태종시기 영락제가 요동의 여진 세력들을 초무하고자 하였을 때, 언급한 세력 중에는 10처 여진<sup>37)</sup>이 있었다. 조선에

32) 『세종실록』 권89, 세종 22년 6월 26일 병신.

33) 『세종실록』 권92, 세종 23년 1월 1일 기해.

34) 『세종실록』 권94, 세종 23년 윤11월 18일 신사.

35) 『세종실록』 권94, 세종 23년 12월 24일 병진.

36) 『세종실록』 권94, 세종 23년 윤11월 18일 신사.

37) 10처 여진인으로는 溪關(縣城) 萬戶 寧馬哈·參散(北靑) 千戶 李亦里不花(李和英)·禿魯兀(端川) 千戶 修參哈·修阿蘆·洪肯(洪原) 千戶 王兀難·哈蘭(咸興) 千戶 朱踏失馬·大伸(海洋 秦神) 千戶 高難·都夫失里(海洋) 千戶 金火失帖木·海童 千戶 董貴洞·阿沙(利原) 千戶 朱引忽·韓合(明川 立岩) 千戶 劉薛列·阿都歌 千戶 崔咬納(崔也吾乃)·崔完者가 있다. 당시 10처 여진인에 대한 조선의 관할권 확보는 특히 조선의 동북지역 영토 확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세종대 4군 6진 지역에서의 많은 군사활동에 이어 郡, 鎭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려말부터 이어져 온 10처 여진인 관할권 확보와 직결되어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10처 여진인 관할권 확보는 조선시대 영토확장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였다(유재춘, 2012, 「麗末鮮初 朝·明간 女眞 귀속

서 10처 여진을 조선의 관할로 주장하며 내세운 명분 중 하나가 조선인과 여진인이 서로 혼인하고 자손을 낳아 부역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sup>38)</sup> 즉, 통혼이 여진인의 조선 정착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였으며, 거류정원 당시 조선정부가 알타리 여진인에게 통혼을 허락한 것 또한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조선정부 차원에서 여진인 통혼 개입은 대외적으로 관할을 주장하는 명분이었으며, 대내적으로는 조선과 여진인의 지속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

李克均이啓하기를, “세종·세조조에는 野人을 중히 대우하였기 때문에 投化한 侍朝者가 많았습니다. 또 永安道에는 연변 성 밑에 투화하여 거주하는 자가 頗多하나, 평안도에는 피차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역시 투화하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 侍朝하는 자는 그 스스로 向化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우리나라 사람에게 장가든 자의 소생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번 동청례가 돌아올 때에 만일 투화해 와서 거주하려는 자가 있으면, 그 중에서 순박하고 삼가하는 자를 택하여 데리고 와서 시조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종조에서 혹 그렇게 하였다 하더라도, 人面獸心인 저들을 어찌 다 믿을 수 있으랴.” 하고, 명하여 정승 및 원임들과 의논하게 하였다.<sup>39)</sup>

위 기사는 이극균이 여진인의 侍朝를 권장하도록 연산군에게 제안하는 기사이다. 이극균은 영안도 관찰사로 임명되기도 하였고,<sup>40)</sup> 평안도 절도사 또한 거친<sup>41)</sup> 당시 북방의 전문가라 할 수 있다. 그는 세종·세조시기에는 시조하는 여진인들이 많았고, 지금 시조하는 여진인은 조선 사람에게 장가든 자의 소생이라 언급하였다. 이극균이 언급한 여진인 중 대표적인 예가 동청례이다. 동청례의 부친은 동소로가무이고 앞서 통혼을 허락받은 여진인 중 한명이었다. 동소로가무는 예빈시

경쟁과 그 意義, 『한일관계사연구』 42, 74쪽).

38) 『태종실록』 권7, 태종 4년 5월 19일 기미.

39) 『연산군일기』 권23, 연산 3년 5월 28일 기사.

40) 『성종실록』 권60, 성종 6년 10월 6일 임오.

41) 『성종실록』 권128, 성종 12년 4월 8일 입자.

판사의 딸과 통혼하였으며, 예빈시 판사의 딸은 조선 내에서 사족으로 평가받던 가문이었다.<sup>42)</sup> 동소로가문의 통혼은 세종시기에 이루어졌는데, 그의 아들인 동청례는 조선의 사신으로 건주위에도 파견되는 등,<sup>43)</sup> 조선과 여진 사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인과 통혼한 여진인의 소생은 조선에 정착하며 여진인과 조선의 관계를 이어가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조선 초기 북방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남하하던 여진인과 조선인의 통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세종시기에는 조선정부가 여진인 개인의 통혼에 개입하기도 하였는데, 통혼은 대외적으로 여진인이 조선에 정착하였다고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대내적으로는 통혼한 이들의 자제가 다시 조선에 시조하여 조선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 Ⅲ. 통혼규정의 제정과 그 의의

통혼규정은 세종시기에 제정되었는데, 이 시기는 여진 귀화인에 대한 지원규정이 제정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1423년(세종 5)에는 귀화인에 대한 의복 하사법,<sup>44)</sup> 1424년(세종 6)에는 전세 3년, 요역 10년 한정으로 면제하는 규정,<sup>45)</sup> 1434년(세종 16)에는 귀화인 거처에 대한 규정<sup>46)</sup>이 생겼다. 이러한 규정들은 여진 귀화인들이 정착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세종시기는 여진 귀화인에 대한 대우를 정비한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통혼규정은 비교적 이후 시기인 1438년(세종 20)에 향식이 되었다.<sup>47)</sup> 앞

42) 『연산군일기』 권50, 연산 9년 9월 18일 신사.

43) 『연산군일기』 권18, 연산 2년 10월 24일 정유.

44) 『세종실록』 권20, 세종 5년 5월 13일 임진.

45) 『세종실록』 권25, 세종 6년 7월 17일 경인.

46)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4월 11일 무오.

47) 『세종실록』 권80, 세종 20년 1월 28일 계축.

서 여진인과의 통혼사례를 통해 통혼이 대외적으로는 조선정부의 여진인 관할을 주장하는 명분이 되기도 하였고, 대내적으로는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시기 통혼규정이 제정되었던 것은 당시 조선의 북방 경영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혼규정의 제정시기는 조선이 북방을 개척하던 시기였다. 조선초기 북방지역은 미확정상태라 할 수 있다. 조선의 경계는 점차 정치·외교·사회의 안정을 기해 가면서 세종 말년에는 접경 상대국과의 협정 없이 일방적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이라는 자연경계선으로 획정하게 된다.<sup>48)</sup>

압록강 상류 연안 영토의 개척과 그 관할 체계는 1416년(태종 16) 閔延郡, 1433년(세종 15) 慈城郡, 1440년(세종 22) 茂昌縣(1442년 淸으로 승격), 1443년(세종 25) 虞芮郡을 설치하며 4군을 완성하였다.<sup>49)</sup>

두만강 유역에서는 1434년(세종 16) 2월 寧北鎭을 伯顏愁所로, 회령진을 幹木河에 설치하고 그 해 겨울 회령도호부로 고쳤다. 1435년(세종 17)에 영북진은 회령부로부터 400호를 떼어 받아 鍾城郡으로 독립하고, 孔州縣이 경원으로부터 300호를 떼어받아 1437년(세종 19)에 경흥군으로 승격되었다가 1443년(세종 25)에 다시 경흥부로 승격되었다. 1441년(세종 23)에는 모두 군에서 종성부와 온성부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1449년(세종 31)에는 石幕의 옛 땅에 富寧府를 설치함으로써 6진을 완성하였다.<sup>50)</sup> 이러한 4군 6진의 설치에 세종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당초 신읍을 설치할 때에는 여러 신하들의 의논이 자못 같지 않았던 것을 경은 아는 바이나,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대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서북의 압록강과 동북의 두만강이 어찌 경중의 구분이 있겠습니까. 藩鎭을 건립하여 封疆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고 한다. 간혹 경솔하게 의논하는 자는 모두 무식한 사람들이다. 대신의 말만큼 이와 같으므로, 나 혼자만이 깊이 염려하는 것은 대개

48) 방동인, 1997, 『한국의 국경획정연구』, 일조각, 198쪽.

49) 방동인, 1997, 위의 책, 204쪽.

50) 방동인, 1997, 위의 책, 225-227쪽.

성 쌓는 것을 늦출 수 없고, 백성들의 폐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賊變이 있을 것이라고 와서 고하는 자의 말을 거짓이라 할 수 없고, 모두 사실이라 할 수 있으니, 남도의 군사를 많이 내지 않을 수 없는데, 재물이 다했으니 무엇을 입으며, 식량이 다했으니 무엇을 먹으며, 힘이 다했으니 어떻게 하며, 도망을 다했으니 누구를 부리겠는가. 하물며 귀화한 언어가 다른 사람이 많이 徭役に 종사하고 있으니 더욱 憐恤하여야 한다. 내가 번번이 이를 생각할 때마다 어찌할 도리가 없다.<sup>51)</sup>

위의 기사에서 세종의 영토 개척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의논할 때 신하들간의 의견이 맞지 않았지만, 세종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영토를 개척하고자 하였다. 세종은 경솔하게 논의하는 이들을 '무식한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하며 영토 개척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세종은 또한 성을 쌓을 백성들의 노고도 생각하며 특히 귀화하여 언어가 다른 사람[向化異語之人, 多預徭役]이 요역에 종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요역에는 귀화인 또한 동원되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개척된 땅에는 인구 부양이 중요한 문제였고, 인구 부양을 위해 남도의 사람들을 북방으로 옮기는 徙民을 실시하였다. 세종시기 사민 양상은 함길·평안도 남도민을 연변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인구가 줄어든 남도 지방에는 하삼도민이나 유이민·범죄인을 입거시키는 것이었다.<sup>52)</sup> 사민에는 귀화인도 포함되었다.

함길도 감사 金宗瑞가 사목을 조목별로 올리기를, ... 입주할 자를 추려 정할 때, 向化人의 자손을 핍계하고 이의 기피를 피하는 자가 흔히 있사온데, 본도의 인민들이 向化인과 婚嫁하여 모두가 서로 관련이 있으므로, 만약 向化인과 조금도 관련 없는 자만을 추려낸다면, 대사는 거의 이루지 못하고 말 것이오니, 向化한 사람 자신을 제외한 그 후손과 외손 등은 모두 뽑게 할 것이며, 또 防牌들은 慶源·鏡城 등지의 방어에 익숙하오니, 용맹 있고 재력 있는 사람을 아울러 뽑게 하소서.<sup>53)</sup>

51) 『세종실록』 권78, 세종 19년 8월 6일 계해.

52) 이상협, 2001, 『조선전기 북방사민연구』, 경인문화사, 32쪽.

53) 『세종실록』 권63, 세종 16년 1월 6일 갑신.

김종서는 조목을 올리면서 입주할 대상에 귀화인의 자손을 핑계하는 이들이 흔히 있다고 하였다. 김종서가 입주자를 선발할 때에 귀화인과 관련 없는 자만을 선발하면 이루지 못한다고 하였을 만큼 많은 여진인들의 자손이 이 지역에 정착하고 있었다. 또, 본인이 귀화한 이들은 선발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정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주시킨다면 정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귀화인 여부의 불분명함은 여진인을 선발하고 활용하고자 할 때에도 드러나는 문제였다.

함길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앞서 내린 傳旨에, ‘慶源·寧北 두 곳에 들어와 사는 족속으로 이어 歸化한 자는, 단지 그들이 와서 住居한 지가 오랜 자, 본국의 인민과 다름이 없는 자만을 뽑으라.’고 하였더니, 이제 신고하는 자가 있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귀화하였고, 어떤 사람은 귀화인의 자식이거나 본국인과 혼인한 자들인데, 이들을 모두 뽑도록 하였기 때문에 귀화한 지 오래고 가까움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뽑았는지도 의심이 된다.’고 하니, 이제 뽑은 자들 가운데 제 몸이 귀화한 자는 몇 戶이고, 귀화한 자손은 몇 호이며, 귀화한 연월의 오래고 가까움과 현재의 뽑은 귀화인에 대하여 그 대개를 기록하여 아뢰라.” 하였다.<sup>54)</sup>

위 기사에서는 조선정부가 귀화인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귀화인지에 대한 여부가 불명확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귀화한 지 오래고 가까움을 분별하지 않고 뽑았는 지도 의심이 된다’고 표현한 것처럼 당시에는 귀화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함경도 감사에게 귀화인의 현황에 대해 파악하도록 전지한 것이다.

여진 귀화인에 대한 파악은 미진하였지만 북방경역을 하기 위해 여진 귀화인도 사민에 포함시켰고, 여진 귀화인까지 사민에 포함시켜야 했을 만큼 많은 수의 여진 귀화인이 함경도에 존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비록 당시 조선정부는 여진 귀화인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혼란한 상황이

54)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4월 7일 갑인.

었지만 귀화인을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조선정부는 여진 귀화인을 파악하기 위해 여진 귀화인 은아리를 함경도로 파견하였다. 세종은 은아리에게 여진 귀화인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였는데, 은아리가 조사한 결과 정착하여 남아 있는 이들은 1, 2호 정도로, 은하리의 관하인 또한 동량북으로 도망간 지 30년이 지났었다고 보고하였다.<sup>55)</sup> 이를 통해 조선 내 여진 추장의 영향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었으며 조선 또한 변방 여진인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음을 알 수 있다.

은아리는 파견 이후에도 안변 이북과 단천 이남의 인민들이 서울로 떠나간 자가 많고, 변두리 고을들로 도망쳐 이사간 자가 잇달아 끊어지지 않는다고 재차 상언하기도 하였다. 이에 세종은 여진 귀화인을 독촉하면 胥動浮言할 것을 우려하여 행성을 쌓고 길목을 막는 설비를 정비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였다.<sup>56)</sup> 귀화인 안집책은 기반시설이 조성된 후 시행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종의 귀화인에 대한 우대는 세종 후반에도 지속되었다.

합길도 都觀察使와 都節制使에게 傳旨하기를, “들어와 귀화한 野人으로서 본국 內地에 살기를 원하는 자를, 서울에 馳啓하여 回報를 기다려서 處置하려면, 내양하는 날짜가 오래 걸려서 혹 농사짓기에 때를 잃게 될 것이니, 이 뒤로는 내지에 살기를 원하는 자가 있거든 경 등이 적당하게 생각하여 조치하되, 吉州 이남에 기름진 토지와 완전 구비된 집을 골라 들어 살게 하고, 곧 식구를 헤아려 의복·양식·소금·간장을 주고, 첫째 농사에는 官에서 사람과 소를 주어 도와주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생업에 편안하게 하라.” 하였다.<sup>57)</sup>

세종은 절차를 생략하면서까지 여진 귀화인을 적극 수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는 여진 귀화인이 조선의 내지에 정착하고자 할 때 조정에 치계한 후 처치를 기다렸다면, 이 시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하도록 한 것이다. 또, 길주

55) 『세종실록』 권78, 세종 19년 8월 7일 갑자.

56) 『세종실록』 권106, 세종 26년 9월 12일 정해.

57) 『세종실록』 권99, 세종 25년 2월 13일 기해.

이남의 토지와 집, 의복, 양식, 소금, 간장 등 의식주 전반을 해결해 주도록 전지하였고, 심지어 첫 해 농사는 관에서 사람과 소를 주어 돕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함경도 일대에서는 여진인들이 혼거하였다. 북방 영토를 개척하던 시기 徙民에는 여진 귀화인이 다수 포함되었고, 조선정부는 이들 또한 개척된 지역에 입거시키고자 하는 등 북방 개척에 있어서도 여진 귀화인을 적극 활용하였다. 때문에 새로 조선으로 귀화하고자 하였던 여진인들 또한 받아들이고자 하는 한편, 함경도에 남아 있는 여진인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여진 귀화인 은아리가 이를 조사하였으며, 은아리의 보고에 의하면 남아있는 이들은 1, 2호 정도로 상당 수는 이탈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진인에 대한 통혼규정은 여진인들을 정착시키고자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함경도 여진인들은 추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흩어져 있는 상태였다. 조선정부는 통혼대상을 규정하여 여진인들에게 조선인과 통혼하도록 하였으며 여진인은 조선인과 통혼하여 조선과 새로운 연결점을 형성하였다.

한편 평안도 지역에서는 조선의 여진 정벌에 따라 직접적으로 생계에 어려운 여진인이 귀화를 선택하기도 하였다. 통혼규정을 규정한 기사에서 언급된 여진인 시가로와 야질대는 파저강으로부터 온 사람이었다.<sup>58)</sup> 특히 이들이 귀화한 배경에는 세종시기 파저강 정벌이 직접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선의 여진 정벌 목적은 여진 세력에 대한 영향력 확보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1424년(세종 6) 李滿住는 명의 승인을 받고 관하인 등 1천여 호와 함께 波猪江에 와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sup>59)</sup> 조선은 사실상 자국의 영역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던 파저강 일대로 이주해온 이만주 세력이 명과의 관계를 더욱 중시하자, 이들을 제압하는 동시에 해당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조선은 여진 세력의 闐延 침입 사건을 계기로 파저강 일대 이만주 세력에 대한 대규모 정벌을 단행했다.<sup>60)</sup>

58) 『세종실록』 권80, 세종 20년 2월 5일 기미.

59) 『세종실록』 권24, 세종 6년 4월 26일 신미.

그러나 세종은 파저강 정벌에서 큰 성과를 올렸음에도 재정벌을 계획했다. 조선의 파저강 재정벌에서 최대 목표는 이만주의 포착이었다.<sup>61)</sup> 건주위 유력 추장인 이만주는 선대부터 조선과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명의 성지를 받아 파저강 일대에 거주하게 되었다.<sup>62)</sup> 조선이 이만주 포착을 정벌의 목표로 삼았던 것은 건주위 여진 세력에서 구심점이 되었던 존재를 제거해 조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sup>63)</sup> 이후에도 조선은 재차 정벌에 나섰고, 두 차례에 걸친 파저강 정벌은 파저강 일대에 거주하던 여진 세력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어려움을 겪던 여진인들이 조선으로 귀화를 선택하였다. 이들에게 조선인과의 통혼은 조선의 파저강 정벌로 인해 약해진 건주위와의 관계 속에서 조선과 새로운 연결점을 형성하는 매개체의 역할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세종은 북방경영을 위해 귀화인들을 적극 수용하고 관리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당시 통혼규정으로 통혼하였던 여진인은 어떤 신분으로 조선사회에 편입되었을까. 여진 귀화인 통혼의 대상은 ‘공사비가 양부에게 시집가서 낳은 여자 [婢嫁良夫所生]’였다. 이 신분의 역에 대한 문제는 태조시기부터 대두되었다. 태조는 비첩의 소생이라도 骨肉이니 노비와 마찬가지로 부리는 것은 미편하다고 하였고, 財主가 생존해 있다면 自己婢妾所生은 영구히 놓아 양민으로 삼는 것을 항식으로 삼았다.<sup>64)</sup>

이후 태종은 비가양부소생에 대하여 양인의 인구를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이들

60) 이규철, 2022, 『정벌과 사대-15세기 조선의 대외정벌과 대명외교』, 100쪽.

61) 이규철은 조선이 정벌을 통해 이만주를 포착하고자 했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파악하였다. 1. 건주위 여진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이만주를 제거하여 여진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확대 2. 이만주가 조선보다는 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추장이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이만주는 파저강 일대로 이주해 올 때 조선의 허락을 구하기에 앞서 황제의 성지를 받아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이만주가 파저강에 살면서 조선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온다고보다는 명의 영향력 하에 있고자 하는 모습이었고, 이 상황을 그대로 둔다면 압록강 일대의 여진 세력에 대한 조선의 영향력이 감소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정벌에 나섰다고 보았다(이규철, 2022, 위의 책, 139쪽).

62) 『세종실록』 권24, 세종 6년 4월 26일 신미.

63) 이규철, 2022, 앞의 책, 127쪽.

64) 『태조실록』 권12, 태조 6년 7월 25일 갑술.

의 종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취하였고 이는 세종까지 이어졌다.<sup>65)</sup> 1432년(세종 14) 3월 26일에 세종은 신하들의 요구에 의하여 비가양부소생 모두를 종량하여 주었던 ‘중부법’을 비가양부소생의 종량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노비신분귀속 법으로 전환하게 하였다.<sup>66)</sup>

상정소에서 아뢰기를, “... 본조의 법에 사내종이 양민인 아내에게 장가드는 것은 금지하는 규정이 있으나, 계집종이 양민인 남편에게 시집가는 것은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남자와 여자가 금지 법령이 다른 것은 진실로 타당하지 못합니다. ... 선덕 7년 7월 초1일 이후에 公私婢로서 양민인 남편에게 시집가는 것은 일절 금지하고, 만일 슈을 범하는 자가 있거든 율에 의거하여 처벌하며, 낳은 자녀는 아비를 따라 양민이 되게 할 수 없으니, 각기 본관 또는 본주에게 돌려주게 하고, 그 중에 1품 이하 동·서반의 품관과, 문과·무과의 출신자와, 생원·성증관·有蔭子孫인 자가 공·사 비녀를 첩으로 삼은 것과, 백성으로서 나이가 40세에 이르도록 아들이 없어서 공·사 비녀에 장가든 자는 이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영락 12년 6월 28일 이후 선덕 7년 6월 그믐날 이전에 공사 비녀가 양민인 남편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녀도 또한 이 범위에 포함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sup>67)</sup>

위의 기사는 1432년(세종 14)인 선덕 7년 7월 초1일 이후 비가양부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위의 기사를 보면 기본적으로 공사비가 양민인 남편에게 시집가는 것은 금지하였다. 즉, 良賤交婚은 금지사항이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예외는 있었다. 예외 대상은 1품 이하 동·서반의 품관, 문·무과 출신자, 생원·성증관·有蔭子孫인 자가 공·사 비녀를 첩으로 삼은 것과 백성 중 나이가 40세에 이르도록 아들이 없어서 장가든 자가 제외되었다. 이와 같이 관원과 관원 후보군, 일부 양민은 예외였는데,<sup>68)</sup> 결국 이들의 딸이 여진 귀화인의 통혼대상이 되었다고 생각

65) 성봉현, 1993, 「朝鮮初期 婢嫁良夫所生の 從良과 贖身法」, 『한국사연구』 82, 45-52쪽.

66) 성봉현, 1993, 위의 논문, 82쪽.

67) 『세종실록』 권55, 세종 14년 3월 26일 을유.

68) 박경, 2014, 「重父 관념을 통해 본 조선 전기의 從良 정책」, 『조선시대사학보』 70, 115-116쪽.

한다. 여진 귀화인 또한 조선에서도 양인으로 분류되어 양인과 통혼한 것이다.

여진 귀화인의 통혼 대상이 양인이었던 것은 조선 사회 내에서는 여진인에게도 적절한 판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사회 내에서는 이민족과 통혼에 대한 반발을 줄이고, 여진인에게는 조선에 정착할 인적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의 입장에서는 개척한 북방을 안정시키는 것 또한 중요한 상황이었고, 여진인이 조선인과 통혼하도록 한 것의 점진적인 목표는 역시 여진인을 조선에 수용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는 당대 조정의 북방 전문가의 인식에서도 잘 드러난다.

예조 판서 김종서와 우참찬 이숙치는 의논하기를, “처음에 內地의 여자로서 이 오랑캐에게 시집가게 한 것은 그가 점차로 내지에 와서 살도록 하여 그로 하여금 영구히 반복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고자 한 것이운데, 중간에 변경하여 그(동소로가 무)의 아내를 회령으로 보내어 성안에서 살게 한 것은 厚意를 보여서 실은 밖으로 배반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만약 그의 집에 내보낸다면 그를 禁制할 방법이 없게 되어 반드시 배반할 마음을 낼 것이옵고, 지금 그가 급급히 아내를 데리고 돌아가고자 하는데, 그 뜻도 헤아릴 수 없으니, 마땅히 전일의 의논한 바에 좇아서 성안에 살게 하되, 그의 왕래를 끊게 할 것이며, 그에 대한 供億의 경비는 가무의 祿俸에 준하여 지급하는 양곡을 녹봉의 수량보다 초과함이 없게 하소서.”<sup>69)</sup>

위의 기사는 김종서와 이숙치가 동소로가무의 거취에 대해 논의하면서 발언한 내용이다. 조선인과 여진인이 통혼하도록 한 것은 점차 내지에 살도록하여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발언을 한 이들이 김종서와 이숙치였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숙치는 평안도 관찰사로,<sup>70)</sup> 김종서는 함경도 관찰사와<sup>71)</sup> 함경도 도절제사에 임명되기도 하는 등<sup>72)</sup> 당대의 북방 전문

69) 『세종실록』 권105, 세종 26년 8월 5일 신해.

70) 『세종실록』 권59, 세종 15년 1월 19일 계유.

71) 『세종실록』 권62, 세종 15년 12월 9일 무오.

72) 『세종실록』 권71, 세종 18년 2월 1일 정유.

가들이었다.

특히 김종서는 세종의 신임을 받고 있던 인물이었다. 김종서가 4진의 형세에 관한 글을 올렸을 때, 세종은 '북방의 일에 대하여 밤낮으로 걱정하는데, 김종서의 글을 보니 걱정없겠다.'며 옷을 하사하기도 하였고,<sup>73)</sup> 6진을 개척할 때, 김종서가 이주민들을 慰撫하고, 여러 여진인들을 불러 모아 사변이 없게 된 것이 그의 공이라고 치하하였으며,<sup>74)</sup> 김종서의 후임 도절제사 李世衡을 임명할 때에는 김종서의 방략을 모두 전하도록 하기도 하였다.<sup>75)</sup> 따라서 이들의 발언은 여진인 통혼과 관련하여 당시 조정 내 의견에서도 주요한 의견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정에서는 여진인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오면 어루어 만지고, 가면 붙잡지 않는 것이 옳다.'는 모습과는 달리 도망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이후 시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세조시기에는 더욱 우대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다.

대사헌 양성지가 상소하였는데, 상소는 이러하였다. … 野人에 이르러서는 평안하여 일이 없으면 우리의 백성과 家畜을 사로잡아 가고, 군사를 일으켜 들어가서 정벌하면 산을 타고서 멀리 도망하게 되니, 이를 막아서 평정하는 데 계책을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이보다 먼저 야인으로서 投化한 사람은 依例 賤口로서 良夫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을 주게 되어 있으니, 먼 지방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이웃 나라를 同一하게 대우하는 의리가 아닙니다. … 금후에 야인으로서 투화하는 사람은 族屬의 強弱에 따라 3등으로 나누어서, 1등은 門蔭 士大夫 집에, 2등은 雜職 士大夫 집에, 3등은 平民 집에 통혼하도록 하고, 그 行城의 성밀과 上東良 등지의 야인은 부근의 土着 軍戶에게, 이와 같이 등급을 나누어 통혼하도록 하소서.<sup>76)</sup>

73) 上覽訖, 卽遣中官嚴自治, 命之曰: “吾於北方之事, 日夜軫慮不置, 今見卿書, 可無憂矣.” 仍賜御衣一襲 (『세종실록』 권78, 세종 19년 8월 6일 계해).

74) 上呼墩進御榻下, 謂墩曰: “金宗瑞之功, 不爲小矣. 撫集新民, 招降諸種, 使東北一方晏然無警, 此其功之尤者也…” (『세종실록』 권88, 세종 22년 1월 19일 임술).

75) 『세종실록』 권91, 세종 22년 12월 5일 계유.

76) 『세조실록』 권40, 세조 12년 11월 2일 경오.

위의 기사는 1466년(세조 12) 양성지의 상소 중 일부이다. 통혼규정이 언급된 1438년(세종 20)부터 3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시점이다. 비교적 시간이 지난 시점임에도 양성지가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세종시기 통혼규정이 시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성지는 획일적으로 천인이 양부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과 통혼시키는 것이 귀화인을 대우하는 것에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더욱 우대하도록 주장하였다. 이에 여진 귀화인 족속의 강약에 따른 통혼대상의 세분화를 주장하였다. 양성지는 1등 문음 사대부, 2등 잡직 사대부, 3등 평민의 집에 여진 귀화인을 통혼시키도록 주장하였고 城底野人<sup>77)</sup>까지 통혼 대상을 정하고자 하였다. 양성지의 상소가 실제 실행 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양성지가 통혼문제를 특히 거론한 것은 여진인을 우대하는 방법 중에서 통혼이 여전히 여진인들을 우대하려는 의도에서 실행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진인의 이탈을 막고자 통혼을 활용하였던 것은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에서는 여진인에 대한 통혼을 우대하고 그들을 정착시키고자 하였던 의도에서 개입하고 실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통혼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막고자 하기도 하였다. 여진 귀화인의 자녀와 성저야인간 통혼을 금지하는 법이 『大典後續錄』<sup>78)</sup>에 수록되기도 하였는데, 처벌은 이혼시키는 것과 더불어 해당 고을 수령은 물론, 권농관과 색장, 심지어 가까운 이웃까지 처벌을 받았다.<sup>79)</sup> 귀화한 사람의 자녀와 성저야인의 통혼이 금지된 배경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이들간 통혼이 금지된 것은 여진 귀화인은 조선과의 동화 측면에서 저해될 소지가 있었고, 성저야인과 결탁하여 분란을 발생시킬 것으로 우려되었기에

77) 이들의 거주 지역은 5진 城底 및 두만강 내외로, 조선에서는 이들을 변리로 인식하였다. 특히 5진 성저에 거주하던 여진인들은 점차 5진의 '城底野人'으로 통칭되어 갔다(한성주, 2018, 『조선시대 藩胡 연구』, 경인문화사, 59-60쪽). 이들은 조선의 행정적 범위 너머 왕명(王命)이 미치는 지역까지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하였기 때문에 조선에 정착한 여진 귀화인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78) 續錄은 누적된 수교 중에서 時宜성이 없어졌거나 모순되는 것을 刪定하고 지속적으로 준용할만한 것을 추출하여 정리한 것이다(윤정, 2013, 「朝鮮 中宗代 『大典後續錄』 편찬과 법률체계의 변동」, 『역사와 실학』 50, 39쪽).

79) 『大典後續錄』, 「兵典」, 禁制: 向化子女毋得與城底野人婚娶. 違者依律論罪, 離異不檢學守令罷黜, 勸農·色掌·切隣杖一百.

이러한 법이 제정되었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 시기 통혼규정이 제정된 것은 여진 귀화인의 정착과 관련있다고 할 수 있다. 여진인들은 점차 여진 추장과와 관계가 느슨해졌고, 이 때문에 이탈을 하기도 하였다. 조선정부는 여진인들의 느슨해진 관계를 조선과의 관계로 대치하기 위해 통혼규정을 제정하여 조선인과 통혼하도록 한 것이다.

#### IV. 맺음말

조선·여진인의 통혼은 지역적인 인접함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동안미 일가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동안미의 부친 동보하는 여진 추장으로, 고려말에 남하하여 조선 가문과의 통혼을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북방에서의 여진인과의 통혼은 지역적 인접성으로 인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종시기에 이르면 여진인의 통혼에 개입하는 사례도 등장하는데, 대부분 '娶妻', '令娶妻', '使娶妻' 등의 기록으로 여진인들에게 조선인과 통혼하도록 하였지만, '許娶妻'의 사례도 나타난다. 통혼을 허락받은 이들은 명과 귀속문제가 얽혀 있던 이들이었다. 조선정부는 대내적으로는 여진인에 대한 회유책의 일환으로, 대외적으로는 관할권을 주장하는 명분이 되기도 하였다.

통혼규정 규정은 당시 조선의 북방경영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함경도 지역에는 여진인들이 혼거하고 있었다. 북방 영토를 개척하던 시기 사민에는 여진 귀화인이 다수 포함되었고, 조선정부는 이들 또한 개척된 지역에 입거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정부는 여진 귀화인을 통해 함경도에 남아 있는 여진인을 조사하는 한편, 새로 조선에 귀화하고자 하였던 여진인들 또한 적극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조선정부는 개척된 지역에 인구를 적극적으로 부양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함경도에 거주하고 있던 여진인들은 추장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고 다수는 떠나간

상황이었다. 이에 조선정부는 통혼 대상을 규정하여 여진인들에게 조선인과 통혼 하도록 하였으며 여진인들과 조선을 연결하는 매개로 통혼을 활용하였다. 이는 조선의 두 차례 파저강 정벌 결과 건주위와의 관계가 느슨해진 파저강 일대의 여진인들에게도 해당하였다.

북방개척 시기 통혼규정이 제정되었던 것은 그만큼 조선의 북방에 있어서 여진인들은 조선과 밀접하고 중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드러낸다. 따라서 조선은 귀화한 여진인들에 대해 ‘오면 어루 만지고, 가면 붙잡지 않는다.’는 정책이 아닌 여진인 개인에게까지 통혼에 적극 개입하여 북방경영을 위해 노력한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1. 사료

『고려사』

『태조실록』

『정종실록』

『세종실록』

『세조실록』

『성종실록』

『중종실록』

『연산군일기』

『대전후속록』

『1397년 십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동아대학교 박물관)

『1409년 심언충 조사첩』, 『1456년 심경종 호구첩정』, 『1490년 심양 준호구』, 『1439년 董安美 戶口牒呈』(한국고문서자료관 <https://archive.aks.ac.kr/>)

### 2. 단행본

박정민, 2015, 『조선시대 여진인 내조 연구』, 경인문화사

방동인, 1997, 『한국의 국경획정연구』, 일조각

이상협, 2001, 『조선전기 북방사민연구』, 경인문화사

이규철, 2022, 『정벌과 사대-15세기 조선의 대외정벌과 대명의식』, 역사비평사

장병인, 1997,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한문중, 2001, 『조선전기 향화·수직 왜인연구』, 국학자료원

한성주, 2011, 『조선전기 수직 여진인 연구』, 경인문화사

한성주, 2018, 『조선시대 藩胡 연구』, 경인문화사

### 3. 논문

권영란, 2017, 「조선 전기 대여진정책과 여진 귀화인 童淸禮」, 『역사와실학』 62

김구진, 1989, 『13C~17C 女眞 社會의 研究: 金 滅亡 以後 淸 建國 以前까지 女眞社會의 組織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상오, 1979, 「이시애의 난에 대하여(下)」, 『전북사학』 3

김윤순, 2013, 「14~17세기 약탈과 교역을 통해 본 여진경제」, 『만주연구』 15

박경, 2014, 「重父 관념을 통해 본 조선 전기의 從良 정책」, 『조선시대사학보』 70

- 박정민, 2022, 「여진 추장에서 조선의 관료로-조선 초 최적 일가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99.
- 백옥경, 2009, 「조선전기 향화인에 대한 혼인규정과 여성」, 『역사학연구』 34
- 서병국, 1972, 「동범찰의 건주우위연구」, 『백산학보』 13
- 성봉현, 1993, 「朝鮮初期 婢嫁良夫所生의 從良과 贖身法」, 『한국사연구』 82
- 원창애, 2009, 「향화인의 조선 정착 사례연구」, 『동양고전연구』 37
- 윤정, 2013, 「朝鮮 中宗代 『大典後續錄』 편찬과 법률체계의 변동」, 『역사와 실학』 50
- 이규철, 2020, 「조선전기 향화 여진인의 활동과 경계인의 삶」, 『역사와 현실』 117
- 이현희, 1977, 「朝鮮王朝의 向化野人 交渉考: 接待問題의 用例」, 『성신여자대학교 연구논문집』 10
- 왕영일, 2003, 「이지란에 대한 연구-조선건국과 여진세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해중, 1972, 「女眞風俗攷」, 『광운대학교 논문집』 2
- 한성주, 2012, 「조선 연산군대 童淸禮의 建州三衛 파견에 대하여」, 『만주연구』 14
- 허흥식, 1978, 「朝鮮初 沈敬宗의 功臣戶와 그 分析」, 『대구사학』 15·16
- 허흥식, 1996, 「13~5 世紀 戶籍資料의 補完과 批判」 『문서연구』 9·10

투고일: 2025년 03월 30일 심사완료일: 2025년 04월 15일 게재확정일: 2025년 04월 17일

■ Abstract ■

## Intermarriage and the Regulations of Marriage Partners among Naturalized Jurchens in the Early Joseon Period

Kim, Ho-Che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cases of intermarriage involving Joseon government intervention and analyzes government perceptions and northern frontier conditions at the time when regulations governing Jurchen marriage partners and their marital eligibilities were established. Following the founding of Joseon, intermarriage between Jurchens and Koreans occurred frequently in the northern regions due to geographic proximity. During King Sejong's reign in particular, the Joseon government not only permitted such marriages but at times encouraged intermarriage among naturalized Jurchens. Externally, these unions served to justify Joseon's juridical claims over the Jurchens, while internally, they fostered human networks that promoted the settlement of Jurchens within Joseon territory.

The enactment of intermarriage regulations was closely tied to Joseon's broader efforts to manage the northern frontier, an undertaking actively advanced under King Sejong's leadership. One major consideration was the settlement of Jurchens who had been residing among northern communities. The regulation of marriage partners during this period should be understood within this broader context. Amid concerns that Jurchens, whose ties to tribal chieftains had weakened, might defect, Joseon implemented intermarriage regulations to sustain relations with them. In practice, Joseon actively pursued the settlement of Jurchens, diverging from the formal principle at the time that "those who come should be welcomed, but those who leave should not be restrained."

Key words: naturalized Jurchens, intermarriage, intermarriage regulations, northern frontier governance